

이주와 개간

- 청대 ‘京旗屯墾’ 정책을 중심으로*

허혜윤**

목차

- I. 머리말
- II. 경기둔간의 논의
- III. 경기둔간의 계획과 실행
- IV. 이주경기의 생계보장 대책
- V. 맺음말

I. 머리말

현재의 중국 동북3성 지역은 청 왕조를 건설한 만주족의 발상지로서 淸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2).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代에는 龍興重地로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명말청초의 전란과 청의 입관으로 이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피폐한 요동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순치13년(1653)에는 ‘遼東招民開墾令’¹⁾을 반포하여 관내 민인(주로 漢人)의 이주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희7년(1668) 요동초민개간령이 폐지되고, 건륭5년(1740)에는 동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봉금정책²⁾이 이루어지면서 한인의 자유로운 이주와 개간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盛京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관내의 유민이 꾸준히 유입되었고 길림, 흑룡강 지역도 성경지역보다는 적지만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토지개간과 개발이 이루어졌다³⁾. 특히 아편전쟁 이후 변화된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1860년대 이후 ‘移民實邊’ 정책의 실행으로 대규모 이민과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⁴⁾

위와 같은 동북지역 토지의 개간과 개발 과정에서 ‘招民’의 방식이 아닌, 국가가 주도한 八旗의 이주와 토지 개간 정책도 실행되었다. 건륭연간에 시작되어 가경, 도광 연간을 거쳐 청말까지 진행되었던 경기둔간⁵⁾ 혹은 移墾정책이 그것이다. 경기둔간이란 북경지역에 거주하는 팔기를 동북의 특정 지역으로 이주시켜 屯田 경작에 종사토록 한 정책이다. 경기둔간은

-
- 1) 유지원, 「봉금’ 그리고 이민과 개발」, 유지원 외 지음, 『이민과 개발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011, 26-34쪽.
 - 2) 유지원, 위의 논문, 35-41쪽; 동북봉금의 시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이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京師 旗人の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史叢』 72, 2011. 292-293쪽 참조.
 - 3) 청대 동북지역의 토지개간에 대한 개론은 許淑明, 「清代東北地區土地開墾述略」, 馬汝珩·馬大正 主編, 『清代邊疆開發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참조.
 - 4) 高強, 『清末東北邊患與移民實邊問題研究』 陝西人民出版社, 2009, 제2장 참조.
 - 5) 許淑明, 위의 논문, 102-105쪽. 경기둔간 정책에 대한 개설로는 刁書仁, 「略論乾隆朝京旗蘇拉的移駐」, 『北坊文物』 2期, 1994; 定宜庄, 「清代京旗移駐東北屯墾始末」, 中央民族學院碩士學位論文, 1985; 魏影、王小紅, 「乾隆朝京旗回屯述略」, 『歷史檔案』 1期, 2007 등이 있다.

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경기둔간 정책은 국가권력에 의한, 일정 정도 강제성을 띤 이주와 개간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동북지역사 연구에서 주목을 받았다. 20세기 전반기 일본과 중국 학자들에 의한 선구적 연구⁶⁾ 등을 비롯하여 기존의 경기둔간 연구는 역사적 과정, 동북지역의 토지개발, 京旗문화, 인물과 가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⁷⁾.

건륭연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기둔간 정책은 팔기의 생계문제 해결이라는 목표하에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본고에서는 경기둔간의 구체적 논의, 계획과 실행과정, 이주 경기에 대한 혜택 등을 살펴봄으로써 청대 경기둔간 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II. 경기둔간의 논의

명대에도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軍屯을 설치하여 토지개간을 장려하고 농업발전을 진흥시킨 전례가 있다⁸⁾. 그런데 청대 경기둔간 정책의

6) 稻葉君山, 『增訂滿洲發達史』, 大阪屋出版部, 1915; 高岩, 「滿洲的京旗屯墾」, 『史潮』 4 (3), 1934; 米倉二郎, 「清代北滿的屯墾-以双城堡屯田的預查報告爲中心」, 『東亞人文學報』 (1) 3, 1941; 劉選民 「東三省京旗屯墾始末」, 『禹貢』 6(3-4), 1936 등의 연구가 있다. 徐廣巍, 「双城堡京旗回屯問題研究綜述」, 『黑河學院學報』 3卷 1期, 2012, 113쪽에서 재인용.

7) 기존의 다양한 연구성과 중에서 魏影의 경기둔간과 관련한 여러 편의 논문과 전론서인 『清代京旗回屯問題研究』, 黑龍江大學出版社, 2010 이 특히 주목된다. 魏影, 「清代京旗回屯思想述論」, 『江南社會學院學報』 4期, 2006; 「略論清代京旗回屯的失敗」, 『北方文物』 1期, 2008; 「清代京旗回屯双城堡始末」, 『清史論叢』, 2008; 「清光緒朝京旗回屯呼蘭始末」, 『北方文物』 4期, 2011; 「清代回屯京旗社會保障述論」, 『歷史檔案』 2期, 2013; 魏影 王小紅, 앞의 논문 등이 있다. 魏影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참고한 관방사료 이외에 미출판의 당안사료, 특히 북경의 第1歷史檔案館에 소장된 滿漢文 『軍機處錄副奏摺』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요한 원인은 팔기의 생계문제 해결이었다⁹⁾. 入關 이후 청 정부는 팔기가 군사 방면 이외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하고 생활에 필요한 일체를 국가에서 공급하였다. 팔기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순치 연간에는 3차례에 걸쳐 북경 주위 수 백리내의 민지를 권점하여 팔기에게 분배하였다. 아울러 각종 부담도 면제하는 등 팔기의 생계문제를 해결하여 군사 작전에만 전력하게 함으로써 청 제국의 공고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삼번의 난이 평정된 이후 장기간의 평화 시기가 도래하면서 팔기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팔기의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순치5년(1645) 전국의 팔기 男丁은 34만 6931명이었는데 강희 60년(1721)에는 69만 6681명으로 증가하여 70여년 사이에 팔기 남정의 수는 거의 배가 되었다¹⁰⁾.

청조는 초기부터 팔기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부담을 감당하였다¹¹⁾. 또한 팔기의 생계해결을 위하여 兵額 확대, 糧餉 증가, 旗地의 回贖, 경기둔간, 漢軍出旗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심지어 옹정 시기에는 고대의 井田法을 부활시켜 100호의 기인들에게 북경 근교의 토지를 지급하고 경작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¹²⁾.

8) 명대 요동지역의 둔전개발에 대해서는 修修主編, 『中國東北史』 4卷, 吉林文史出版社, 1998, 984-1000쪽 참조.

9) 대다수의 연구가 경기둔간의 근본적인 이유로 팔기의 생계문제 해결에 주목하였다. 이훈은 18세기 초 팔기의 전반적인 문제가 경제만이 아니라 만주족 전통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기의 이주지가 만주로 선정된 이유와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훈, 앞의 논문 참조.

10) 安雙成, 「順康雍三朝八旗丁額淺析」 『歷史檔案』 2期, 1983, 100-103쪽; 安雙成 譯 「清初編審八旗男丁滿文檔案選譯」, 『歷史檔案』 4期, 1988; 팔기병사와 기인 수에 관한 상이한 의견은 이훈, 앞의 논문, 272쪽 참조.

11) 당시 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기인에게 실질적으로 연간 국가수입의 20-25% 가량을 매년 지출하였다. 이훈, 위의 논문, 271쪽 참조.

12) 이훈, 앞의 논문, 273쪽, 주11 참고

그러나 정전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도 팔기의 생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건륭원년(1736) 건륭제는 옹정대에 시행되었던 정전법의 폐지를 선언했고,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경지역의 팔기 일부를 관외로 이주시켜 둔전을 개간하여 변방을 충실히 하자는, 즉 '移京旗實邊'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건륭 이전에도 경기를 동북으로 이주시키자는 논의는 있었다. 강희8년(1669) 호부상서 米斯瀚은 북경지역의 無職無產, 즉 閑散 기인을 지방으로 이주시켜 耕牛와 종자, 농지를 지급하자는 소를 올렸다¹³⁾. 또한 옹정 연간에도 여러 차례 경기둔간의 논의가 있었다¹⁴⁾. 이제 건륭제가 즉위하면서 팔기의 생계곤란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경기둔간의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건륭2년(1737) 御史 舒赫德은 북경지역에 거주하는 閑散 경기를 성경, 흑룡강과 영고탑 등지로 이주시키자는 상주를 올렸다.

신은 장구적인 대책을 숙고했는데 (지금의) 형세는 개혁하여 배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생각건대 한 지역에 모여 있지 않으면 이로울 것입니다. 진실로 나중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어찌 목전의 어려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성경, 흑룡강, 영고탑 세 지역은 우리 왕조가 흥기한 지역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지기가 두터운 곳입니다. 듣건대 그 곳은 비어있는 넓은 땅이 많고 대개 개간이 가능한 곳입니다. 비록 만주팔기를 다른 곳으로 분산할 수 없지만 이 곳은 근본지지이니 이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팔기의 액병이 10만에 이르고 게다가 한산 성정(成丁)이 수만 명이며, 여기에 노인과 아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 곳에 나누어

13) 「順治年間有關墾荒勸耕的題奏本章」, 『歷史檔案』 2期, 1981.

14) 魏影, 「清代京旗回屯思想述論」, 『江南社會學院學報』 4期, 2006, 66쪽 참조.

이주시키면 경성의 정예가 약해지는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근본증지에 강한 군사를 더하게 되니 양쪽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경사와 세 지역의 토지를 합계내고 고르게 나누어 지급하여 집마다 향산이 있고 사람마다 향심이 있게 하십시오, 그런 후 다시 검박을 가르쳐서 처음의 기풍을 돌이킨다면 근본을 공고하게 하는 장구지책입니다.¹⁵⁾

건륭5년(1740)에는 御史 范咸이 한산 경기의 이주를 상주했다. 범함은 이주지로 감숙을 검토한 이후 만주를 거론했다.

근래 감숙 등지의 개간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安西鎮은 고립된 關外이고 진의 동쪽으로는 경작할만한 토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漢代의 遺址가 많다 합니다. 특별히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을 파견하여 두루 조사하고 헤아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간하여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할 수 있으면 경사지역의 한산 기인을 이주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서 둔전할 때에는 관에서 여비와 경종의 비용을 지급하고, 법을 마련하여 개간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하면 됩니다. 또 세 계절은 농사에 힘쓰고 한 계절은 군사훈련을 하면 장래에 서북군영에 군수를 수송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가 농사를 겸하면서도 변경방어에 쓸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만약 서쪽이 멀다면 요동의 변외는 원래 우리 나라의 발상지이고 흥경은 도회를 세우기에 적합하니, 개간하고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서 기인을 파견하여 먼저 가서 주둔하면서 목축하게 하십시오. 그 나머지 영길주, 영고탑, 흑룡강은 너비가 4-5천리 이상인데 그 곳에는 겨우 목장만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이를 폐지하여 한전이 되었으니 매우 아깝습니다. 지금 전성기를 맞아 일시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오직 억만년의 공고함

15) 舒赫德, 「八旗開墾邊地疏」, 『皇朝經世文編』 卷35 「戶政18」 八旗生計. 舒赫德은 동북지역에 대한 전면적 봉금정책을 계획한 인물이었다. 이훈, 앞의 논문, 275-276쪽 참조.

을 유지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것인지는 해당부서와 팔기도통에 명을 내리셔서 상세히 의논하고 상주하게 하십시오. 기인의 생계를 여유롭게 하고 변경의 기반을 공고하게 하는데 힘쓰다면 이는 실로 천지자연의 이익에 따르는 것이니 영구적인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¹⁶⁾

범함의 주장을 보면 한산경기의 이주지가 처음부터 동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감숙지역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 건륭 초기의 대외전략적인 측면을 보면 팔기의 이주지는 만주보다 서북지역으로 정해지는 것이 타당했다¹⁷⁾. 왜냐하면 동북은 강희 28년(1689)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가 건륭연간까지 계속되고 있었지만, 감숙은 강희 연간 이래 준가르와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던 전선의 배후지역이었다. 따라서 전략적 측면만을 본다면 감숙이 동북보다 더 중요했고 병력을 증가, 배치해야 할 필요성도 컸다. 감숙에서의 군둔은 이미 강희 연간 이래 시행되어왔다. 강희 연간 군량 수송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서북 변경지역에 둔전을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북지역에 둔전이 확대되고 초기의 군둔을 벗어나 기둔, 병둔, 관둔, 민둔, 회둔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와 개간이 이루어진 것은 준가르를 멸망시킨 건륭23년(1758) 이후였다. 그런데 이 지역의 둔전에 이주시킨 병력의 대부분은 팔기가 아니라 녹영병이었다¹⁸⁾. 이를 볼 때 팔기의 둔간지를 선정하는데는 단순히 가경지의 유무나 경사로부터의 거리만이 기준이 된 것은 아니었다.

16) 范咸, 「八旗屯種疏」, 『皇朝經世文編』 卷35 「戶政18」 八旗生計. 이훈, 앞의 논문, 277쪽 참조.

17) 청초 감숙을 비롯한 서북 둔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王希隆, 『清代西北屯田研究』, 新疆人民出版社, 2012, 제1장 清代西北興屯的歷史背景; 이훈, 앞의 논문, 278-279쪽 참조.

18) 이훈, 위의 논문, 280쪽.

이어서 건륭6년(1741)에는 戶部侍郎 梁詩正이 기인의 이주를 상주했다.

내지에는 이미 빈 전지가 없으나 변경에는 아직도 경작할 만한 토지가 있습니다. 흥경과 성경은 실로 근본지지이고 王氣가 모인 곳이며 그 부근 지역은 비옥한데도 아직 개간되지 않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옹정제께서는 탁월한 견해를 발휘하시어 만세의 이로움을 헤아리고, 기인의 인구는 증가했는데 재정을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흑룡강, 영고탑 등지에 기인을 나누어 보내어 거주하면서 경작하게 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옹정 12-13년에 조사하여 이미 의논은 정해졌으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¹⁹⁾

이외에도 赫泰, 柴潮生 등 건륭시기를 대표하는 저명한 인물들이 ‘이경기실변’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팔기에게 恒産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력갱생을 도모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북경 주위에는 팔기에게 지급할 대규모 경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광활한 미개척지인 변경지역에 둔전을 개간하는 방법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팔기병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만주족의 발상지이자 용흥중지, 근본중지²⁰⁾인 동북 3성이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건륭6년(1741) 5월에는 조정의 議覆이 진행되었다²¹⁾. 이를 보면 이주지가 동북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동북 내의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 議覆에서 결정된 것은 현지답사를 시행한 후에 이주지를 선정하자는 것이었다.

19) 梁詩正, 「八旗屯種疏」, 『皇朝經世文編』 卷35 「戶政18」 八旗生計. 이훈, 앞의 논문, 280쪽 참조.

20) 청조 통치자의 만주 인식에 대해서는 이훈, 앞의 논문, 3장 根本之地의 語義 변화와 근본지지 만들기 참조.

21) 『清高宗實錄』 권143 건륭6년 5월 下 계미.

Ⅲ. 경기둔간의 계획과 실행

1. 拉林, 阿勒楚喀 둔전

건륭6년(1741), 청정부는 大學士 查郎阿, 侍郎 阿里袞 등을 파견하여 봉천 일대 여러 지역을 답사한 후 건륭7년(1742) 5월 둔간지역을 拉林 (현재의 흑룡강성 五常시 拉林鎮) 과 阿勒楚喀(현재의 흑룡강성 阿城市)으로 결정하였다. 이 곳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吉林烏拉 (현재의 길림시)과 가까워 관리하기에 편하고, 둘째, 지세가 평탄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5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고, 셋째, 강이 흐르고, 넷째, 삼림이 무성하여 목재를 채취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이었다²²⁾. 그리고 건륭7년(1742) '移墾拉林章程'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³⁾.

- 1) 이주 경기는 1000戶를 목표로 한다
- 2) 매 호당 가옥 3칸과 토지 3頃을 제공한다
- 3) 가옥은 伯都訥, 三姓 지역에서 병사를 파견하여 건축한다
- 4) 토지는 吉林烏拉, 阿勒楚喀의 병사를 동원하여 2년에 걸쳐 1800경을 미리 개간하여 이주경기가 도착했을 때 토지와 耕牛를 지급하여 경작하게 한다.
- 5) 경기 도착시 매 기당 2屯을 설치하여 모두 16둔이 된다. 매 둔마다 둔장 1인을 두어 관리한다.

건륭8년(1743) 에는 길림오랍의 병사들이 개간한 토지가 대체로 완성되어 그 해에 이미 보리 7700여석을 수확하였다²⁴⁾.

22) 『清史列傳』, 권20, 「阿里袞傳」

23) 『清高宗實錄』 권166, 건륭7년 5월 상 을축; 권178, 건륭7년 11월 신유.

24) 『清高宗實錄』 권213 건륭9년 7월 병신.

그리고 건륭9년과 10년(1744,1745)에는 1000호 경기의 이주가 완료되었다.

특히 拉林, 阿勒楚喀 둔전이 개발된 건륭 초기에는 국가재정이 풍족하여 이주경기에 대한 대우도 특별했다. 북경지역에서 출발하는 경기에게는 매 호당 治裝銀 30兩을 지급하고 출발시에는 수레 2량을 지급하였다. 또한 북경에서 성경에 이르는 역참에서의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하였다. 둔간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매 호당 立業銀 50兩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양식도 제공하였다²⁵⁾.

그러나 경기 이주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동력이 부족한 호구, 혹은 농사의 경험이 없어 경작 방법을 알지 못하는 호구의 존재였다. 그리고 지급된 3경의 토지를 자력으로 경작하기 힘들게 되면서 이주 경기는 다시 생계곤란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 정부는 매년 拉林지역의 경기에게 백은 5천량과 농기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²⁶⁾

건륭 11년(1746) 개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관이 지급한 2000두 耕牛 중 남은 것은 500두에 불과하고 가옥도 삼분의 일이 훼손되거나 소실되었다. 이미 분배된 1000경 토지 중 630경만 경작되고 나머지는 다시 황폐화²⁷⁾ 되었다. 또한 대다수 이주 경기는 시험적으로 온 경우가 많아 가족을 동반하지 않았다.

청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²⁸⁾.

- 1) 拉林으로 이주하는 경기는 일률적으로 가족을 동반한다.

25) 第1歷史檔案館藏 『軍機處滿文錄副奏摺』 613-11호, 16호. 魏影, 「清代回屯京旗社會保障述論」, 『歷史檔案』 2期, 2013, 78쪽에서 재인용.

26) 『清高宗實錄』 권255 건륭10년 3월 무인.

27) 『清高宗實錄』 권289 건륭 12년 4월 병술.

28) 『清高宗實錄』 권422 건륭 17년 9월 정유.

- 2) 범죄를 저지른 기인 또한 拉林에 이주시켜 농업에 힘쓰게 하였다.
- 3) 경작 방법에 어두운 경우 노복을 고용하여 대신 경작이 가능하게 하였다.
- 4) 3경 토지 외의 황무지도 노복을 고용하여 개간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개선노력 등으로 건륭19년(1754) 拉林 둔전은 비로소 효과를 거두게 되고 拉林에 이주한 경기 100명은 최근 생계가 점점 부유해졌다²⁹⁾고 기록하였다.

拉林的 경기둔전이 성공한 이후 건륭19년(1754) 10월 청 정부는 경기둔전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阿勒楚喀 부근에 다시 3천 경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기 3천 호를 이주시켜 48촌을 설치하였다³⁰⁾. 이 때 이주한 호구에게는 매년 백은 2500량을 주고 10년 후에는 이를 반감하고 20년 후에는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래의 계획은 건륭21년(1756)부터 매년 500호를 이주시켜 건륭24년(1759)까지 모두 2000호를 이주시키는 것이었다³¹⁾. 비록 도망가거나 북경으로 돌아가는 자도 많았지만 이주한 경기의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 남았다³²⁾.

최종적으로 拉林과 阿勒楚喀으로 이주한 경기는 근 3000호에 달했고 실제로 개간된 토지는 拉林 64913晌³³⁾, 阿勒楚喀 98640상으로 당시의 길림 지역에서는 중요한 농업개간지역이 되었다

29) 『清高宗實錄』 권475 건륭19년 10월 신미.

30) 『清高宗實錄』 권475 건륭 19년 10월 신미.

31) 『光緒大清會典事例』 권 1127, 八旗都統, 兵制.

32) 『清高宗實錄』 권600 건륭 24년 11월 경신.

33) 동북지역에서 사용하는 토지면적 단위로 1상은 약 15畝이다.

2. 双城 屯田

가경 중엽에는 건륭연간의 拉林과 阿勒楚喀 屯田의 성과를 계승하여 청 정부는 다시 길림지역의 경기둔간을 결정하였다. 이번에는 拉林 서북 80리에 위치한 双城 일대가 둔간지로 결정되었다.

가경17년(1812) 길림장군 富俊의 계획에 따라 ‘双城屯田試墾章程’을 제정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 1) 길림소속의 한산 기인 1000명을 屯丁으로 차출하여 1인당 황무지 30상을 지급하여 20상은 경작하고 10상은 황무지로 둔다. 관에서 耕牛와 농기구, 종자 등을 지급하고 4년 후부터 조세를 징수한다.
- 2) 10년 후 경기 이주시에 매 호당 이미 개간한 토지 15상과 황무지 5상을 지급한다. 원래의 屯丁은 성숙지와 황무지 각 5상씩 남겨 향산으로 삼는다.

拉林屯田은 길림지역의 팔기 사병 등이 개간하여 성숙지가 된 이후 개간지 전부를 이주한 경기에게 분배하였다. 반면에 双城屯田은 예비 개간을 담당했던 해당 지역의 屯丁에게 토지를 남겨주는 방식을 채택하여 屯丁이 개간에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한산 기인을 배치하여 그 지역의 농업경작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도 유리하였다³⁵⁾.

가경21년(1816)부터 길림지역의 屯丁이 개간을 시작하여 双城 中屯을 개간하였다. 다음 해 성경과 길림지역에서 온 2000명의 한산기정이 双城 左屯과 右屯을 개간하여 屯丁의 개간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双城 屯田의 효과는 성경지역의 한산 기인이 双城지역을 樂土로 보고 분분히 와서 耕種을 청했다³⁶⁾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双城

34) 『清仁宗實錄』 권299 가경19년 11월 계축.

35) 『吉林通志』 권31 下 식화지 4.

3등의 개간지는 9만 수천 상³⁷⁾에 달했다.

예비개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3년 후부터 매년 200호 경기를 이주시켜 15년 동안 모두 3000호의 경기 이주를 결정하였다. 이때도 역시 북경 출발시 매 호당 治裝盤費銀 30량과 소속 팔기의 公幫銀 15량을 지급하였다 또한 가구당 인원 수에 따라 수레를 제공하고 연도의 역참에서는 별도의 은량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래 정해진 토지와 가옥 이외에도 다양한 농기구 일체와 가구, 생필품, 식재료 등이 지급되었다³⁸⁾.

그러나 도광원년(1821)에 이르러 双城이주를 원하는 경기는 28호에 불과하였다³⁹⁾. 도광6년(1826)에는 이주한 경기 270호가 双城중둔에 배치되었다. 도광8년(1828) 이미 이주한 경기는 376호⁴⁰⁾였다. 이로 인해 도광9년(1829)에는 원래 이주를 계획한 경기의 수를 3000호에서 1000호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도광18년(1838)에 이르기까지 이주한 한산경기는 698호에 그쳤고 그중에는 물론 북경으로 돌아가거나 도망하는 자도 있었다. 동치 10년(1871)의 통계에 따르면 双城堡의 473호 이주 경기 중 빈곤가구의 수는 1/3에 달했다⁴¹⁾.

이주경기 빈곤화의 주요한 원인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분배받은 대규모 토지를 모두 경작하기가 어려워서 수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²⁾.

36) 『吉林通志』 권31 下 식화지 4.

37) 『清宣宗實錄』 권12 도광원년 정월 무오.

38) 王履泰, 『双城堡屯田紀略』, 吉林文史出版社, 1990, 42-44쪽; 第1歷史檔案館 編, 『嘉慶道光兩朝上諭檔』 29冊, 2000, 336-337쪽, 462쪽 참조. 第1歷史檔案館藏, 『軍機處滿文錄副奏摺』 03-3388-024호, 魏影, 「清代回屯京旗社會保障述論」, 『歷史檔案』 2期, 2013, 78쪽에서 재인용.

39) 『清宣宗實錄』 권28 도광2년 정월 계유.

40) 『清宣宗實錄』 권146 도광8년 11월 정미.

41) 第1歷史檔案館藏, 『軍機處錄副奏摺』, 03-3393-096호, 魏影, 「清代回屯京旗社會保障述論」, 『歷史檔案』 2期, 2013, 79쪽에서 재인용.

42) 第1歷史檔案館藏, 『軍機處錄副奏摺』, 03-0687-023호, 03-3393-099호; 第1歷史檔案館

또한 빈곤가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토지집중 현상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双城에 한산 경기 3000 호 혹은 1000 호를 이주시키려던 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비개간을 담당했던 해당 지역의 旗丁이 이주 경기 대신 이 공백을 메꿈으로써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 개간지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伯都訥 둔전

伯都訥은 길림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일찍 개발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광희연간 초기에 이미 관장이 개설되었다. 특히 옹정 연간부터 관내의 유민이 유입되면서 개간지가 확대된 지역이다. 그러나 건륭6년(1741) 5월 이 지역에서 민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민인이 관병과 함께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을 금지했다⁴³⁾. 이어 동년 9월에 길림에 전면적인 봉금을 시행하였다⁴⁴⁾. 그러나 가경18년(1813)에 이르러 이미 조세를 납부하는 丁民은 7762 호에 이르고 개간지도 29729무에 이르렀다⁴⁵⁾. 그러나 20 여만 상에 이르는 伯都訥 圍場은 아직 개방되지 않아서 출입과 개간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圍場 및 伯都訥 주위의 토지는 개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기인과 민인들의 私墾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런 개간지는 정부의 묵인하에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건륭34년(1769)에 伯都訥 지역에 들어온 유민에 대해 개간 2년 후부터는 조세납부⁴⁶⁾를 결정하였다. 가경연간에도 사전에는 개간을 엄금했지만

藏, 『軍機處滿文錄副奏摺』, 617-6호, 1564-26호, 魏影, 위의 논문, 79쪽에서 재인용.

43) 『清高宗實錄』 권137 건륭6년 5월 신미.

44) 『清高宗實錄』 권137 건륭6년 9월 무진.

45) 『吉林通志』 권31 하 식화지 4.

46) 『光緒大清會典事例』 권156 戶部 戶口.

이후에는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伯都訥 圍場은 여전히 정식으로 개방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미 가경23년(1818)에 길림장군 富俊은 伯都訥 圍場을 개간하여 한산 경기를 이주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双城둔전 개간으로 경비문제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도광원년(1821) 한산경기가 双城으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富俊은 다시 伯都訥 圍場의 개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富俊이 제안한 개간 방식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拉林둔전의 경우 병사를 파견하여 대신 황무지를 개간한 후에는 이를 전부 이주 경기에게 주었다. 그리고 双城둔전은 성경과 길림의 한산 기정을 징발하여 개간 이후에는 이주경기에게 부분적으로 토지를 분배하였다.

富俊이 제안한 伯都訥 둔전의 개간방식은 매 屯丁이 30상을 받은 후에 비개간을 진행한 이후 이주 경기에게는 20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상은 자신의 향산으로 한다⁴⁷⁾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식은 결과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비문제 해결, 개간지 경작에 유리하였다. 双城의 개간비용은 17-18만량인데 이주경기가 경작이 힘든 경우에는 민인을 고용하여 경작⁴⁸⁾할 수도 있었다.

도광5년(1825) 伯都訥 圍場 개간이 시작되었고 개간지역은 伯都訥 부도통이 관리하였다. 도광7년(1827)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600호가 120둔을 개간하여 경지 108,000 상이 개간되었지만 그중 20,142상은 용수 부족으로 폐기되기도 하였다⁴⁹⁾.

47) 『吉林通志』 권31 하 식화지 4.

48) 『吉林通志』 권31 하 식화지 4.

49) 『清宣宗實錄』 권219 도광12년 9월 무오.

IV. 이주 경기의 생계보장 대책

청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북경지역의 한산 기인을 동북지역으로 이주시켜 둔전을 개간한 것은 한산기인들이 ‘官養之’에서 벗어나 ‘自爲養’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둔간지에 이주한 경기의 생계가 빈곤해지면서 청 정부는 다시 여러 가지 구제책을 마련하여 이주 경기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1. 紅白事 비용 지급

청대에는 팔기 병정의 홍백사(혼사와 장례)에 대한 償賜은량이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이주 경기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륭9년(1744) 拉林지역의 이주경기에 대한 상은은 紅事의 경우 4량, 白事의 경우 10량으로 규정했다⁵⁰⁾. 그 해 10월 처음으로 이주한 경기는 위의 규정대로 상은을 지급받았으며 건륭10년(1745)에 이주한 경기는 그 해 6월부터 상은을 지급받았다. 비록 5년 이후 경작에 익숙해지면 상은 지급을 정지한다⁵¹⁾고 했지만 건륭14년(1749)이 되자 대다수의 경기들이 농경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홍백사를 당하면 형편이 곤란해지니 상은지급이 계속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남림부도통 滿福은 길림장군 永興을 거쳐 이주경기에 대한 홍백사 상은을 5년 더 연장할 것을 주청했다. 건륭제는 이에 대해 “남림병사 1000명의 만주기인들에 지급하는 홍백사 상은을 어찌 정지시키겠는가? 영원히 상은을 지급한다”고 하였다⁵²⁾.

双城둔전의 경우에도 남림의 전례를 따랐다. 도광원년(1821)에 경기둔

50) 『清宣宗實錄』 권181 건륭7년 12월 기유.

51) 위와 같음

52) 第1歷史檔案館藏, 『軍機處滿文錄副奏摺』, 1500-1호, 魏影, 앞의 논문, 81쪽에서 재인용.

간장정을 제정할 때 경기가 쌍성보에 이주한 이후 홍백사에 대해서는 “길림 팔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⁵³⁾”는 조항을 두어 홍백사 비용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후 모든 둔간지의 이주 경기에게도 적용되었다.

2. 농사관련 비용의 추가지급

홍백사 비용 이외에도 이주 경기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륭10년(1745)에는 5천량의 별도비용을 마련하여 실제 경작을 담당할 노복이나 耕牛, 농기구 구매에 충당하도록 하였다⁵⁴⁾. 동시에 이후 수년이 지나 둔간지에서의 농사가 안정된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필요없을 경우 비용지급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5천량의 추가비용은 1년 안에 모두 소진되었다⁵⁵⁾. 이후에도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러한 추가비용은 계속 지급되었으며 함풍연간 태평천국 운동으로 정부의 재정이 심각하게 곤란해진 시기에 이르러서야 정지되었다⁵⁶⁾.

3. 환과고독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생계보장

위의 2가지가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 이외에도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생계보장 조치도 마련되었다. 대청률의 규정에 따르면 가장을 상실한 기인의 과부 등은 경사로 돌아가서 노후를 지내게 된다. 처음에는 이주 경기의 둔간지에서도 이런 규정에 따랐다⁵⁷⁾. 그

53) 王履泰, 『双城堡屯田紀略』, 吉林文史出版社, 1990, 42쪽.

54) 第1歷史檔案館藏, 『軍機處滿文錄副奏摺』, 615-10호, 魏影, 앞의 논문, 82쪽에서 재인용.

55) 第1歷史檔案館藏, 『軍機處滿文錄副奏摺』, 538-15호, 魏影, 위의 논문, 82쪽에서 재인용.

56) 第1歷史檔案館藏, 『宮中朱批奏摺』, 04-01-35-1060-044호, 魏影, 위의 논문, 82쪽에서 재인용.

러나 경사로 돌아가서도 해당 팔기 내에서의 부양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후에는 이주한 둔간지역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하였다⁵⁸⁾.

이외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대간비용 또한 지급했고 이런 관례는 청말까지 지속되었다⁵⁹⁾.

4. 재해구제

경기 둔간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⁶⁰⁾했는데 그 때마다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활동이 이루어졌다. 우선 평시에 구황대책을 수립하여 준비하였다. 둔간지역에서는 초기부터 창고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갔다. 풍년이 든 해에는 남은 양식을 구매하여 비축하였다⁶¹⁾.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각종 조치를 취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의 지급이었다⁶²⁾.

위와 같이 이주 기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둔간지의 기인들은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경작할 토지가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이주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비용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건륭부터 도광연간까지 약 5천 호의 경기가 이주하면서 일정 정도 성과를

57) 『光緒大清會典事例』 권722.

58) 위와 같음.

59) 魏影, 앞의 논문, 81-82쪽 참조.

60)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연도는 건륭20년, 가경21년, 도광10년, 11년, 12년, 동치2년, 3년, 12년, 광서2년, 22년 등이다. 魏影, 위의 논문, 83쪽 참조.

61) 『清高宗實錄』 권682 건륭28년 3월 무진; 『光緒大清會典事例』 권289.

62) 第1歷史檔案館藏, 『宮中朱批奏摺』 04-01-35-0067-008호, 04-01-35-0068-021호, 魏影, 앞의 논문, 83쪽 재인용.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선조의 성공적인 유지를 받든다는 의미가 강화되면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계속 추진되기도 하였다.

V. 맺음말

청대 길림지역의 경기둔간은 '恩養旗人'이라는 국가의 대원칙을 동요시키는 정책이었다. 후대의 자발적인 동북이민과 비교하면 시종일관 국가가 계획하고 진행시킨, 강제성을 가진 동북이주와 개간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팔기의 생계문제 해결이었다. 청의 입관 이후 팔기 인구의 증가와 팔기에 대한 다양한 특혜성 대우로 말미암아 정부의 재정부담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 건륭 초기는 이전에 시행한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 정부가 선택한 것이 경기의 동북 이주와 개간정책이었다.

그렇지만 이주 경기의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이주지로서 동북지역이 결정된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결정이었다. 익숙한 북경 지역을 떠나 생소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해야만 했던 기인들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⁶³⁾ 이런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내려진 동북으로의 둔간 결정은 청대 동북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바 크다. 경기둔간의 논의 과정 중에서 사용된 용흥중지, 근본중지, 故土 등의 수사는 청과 만주족의 발상지로서 동북지역이 가지는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기

63) 魏影, 앞의 책, 88-90쪽 참조.

둔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인 건륭5년(1740)에 내려진 전면적인 ‘동북봉금’ 정책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기둔간과 전면적 동북봉금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동북 둔간지라는 생소한 환경하에 이주 경기에게는 개간의 준비과정과 이주과정, 그리고 정착 이후에도 다양한 명목의 혜택이 주어졌다. 팔기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경기둔간은 이주와 개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원래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북경지역을 떠나 생소한 환경에 직면한 기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에 대응한 혜택은 결과적으로는 이주 경기들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건륭 말기 이후 화북지역에서 계속된 기근 등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재난으로 관내 민인들의 자발적인 이주가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移民實邊’의 기치하에 동북지역으로의 대규모 이민과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移京旗實邊’에서 시작된 동북변경 방어외 개념도 ‘移民實邊’으로 변화하였다. 18세기 중반 시행된 전면적인 동북봉금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했던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폐기되고 한인의 대규모 이주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⁶⁴).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둔간 당시에 건설된 팔기 村屯은 여전히 만주족 우위의 인구 구성비를 보여주면서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개발에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주제어 : 팔기생계, 이경기실변, 경기둔간

(논문투고 : 2017.12.13 / 논문심사완료 : 2017.12.15 / 논문게재 확정일 : 2017.12.19)

64) 이훈은 청조가 동북봉금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봉금이 곧 “국가의 근본”인 만주족의 이익을 지키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훈, 앞의 논문, 292-301쪽 참조.

참고문헌

1. 사료

- 『大清律例』, 天津古籍出版社, 1995.
- 『大清會典事例』 中華書局, 1991.
- 『清實錄』, 中華書局, 1986.
- 賀長齡, 『皇朝經世文編』, 文海出版社, 1972.
- 葛士濬, 『皇朝經世文續編』, 上海書局, 1898.
- 『八旗通志初集』,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5.
- 『欽定八旗通志』, 吉林文史出版社, 2002.
- 『吉林通志』, 吉林文史出版社, 1986.
- 薩英額撰, 『吉林外記』, 黑龍江教育出版社, 2014.
- 王履泰, 『双城堡屯田紀略』, 吉林文史出版社, 1990.
- 彭雨新編, 『清代土地開墾史資料匯編』, 武漢大學出版社, 1992.
- 「順治年間有關墾荒勸耕的題奏本章」, 『歷史檔案』 2期, 1981.
- 安雙成, 「順康雍三朝八旗丁額淺析」 『歷史檔案』 2期, 1983.
- 安雙成 譯, 「清初編審八旗男丁滿文檔案選譯」, 『歷史檔案』 4期, 1988.
- 葉志如編, 「乾隆朝回贖民典旗地史料」(上、下), 『歷史檔案』 2、3期, 1991.
- 第1歷史檔案館滿文部、黑龍江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合編, 『清代黑龍江歷史檔案選編』, 黑龍江人民出版社, 1986.

2. 연구서

- 高強, 『清末東北邊患與移民實邊問題研究』, 陝西人民出版社, 2009.
- 高樂才, 『近代中國東北移民研究』, 商務印書館, 2010.
- 佟修 主編, 『中國東北史』(全6冊), 吉林文史出版社, 1998.
- 馬汝珩、馬大正 主編, 『清代邊疆開發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 馬平安, 『近代東北移民研究』, 齊魯書社, 2009.
- 辛培林 張鳳鳴 高曉燕, 『黑龍江開發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9.
- 楊余鍊等, 『清代東北史』, 遼寧教育出版社, 1991.
- 吳廷玉、衣保中、陳玉峰、李帆, 『清代滿洲土地制度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2.
- 吳廷玉·張云樵·張占斌著, 『東北土地關係史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0.
- 王革生, 『清代東北土地制度史』, 遼寧大學出版社, 1991.
- 王希隆, 『清代西北屯田研究』, 新疆人民出版社, 2012.
- 魏影, 『清代京旗回屯問題研究』, 黑龍江大學出版社, 2010.
- 衣保中, 『東北農業史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5.
- 李治亨 主編,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2001.
- 林士鉉, 『清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研究』, 國立政治大學歷史學系, 2001.
-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 1644-1911』, 吉林人民出版社, 2003.
- 定宜庄, 『清代八旗駐防研究』, 遼寧民族出版社, 2003.
- 刁書仁, 『東北旗地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4.

3. 연구논문

- 유지원, 「'봉금' 그리고 이민과 개발」, 유지원 외 지음, 『이민과 개발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011.
- 이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京師 旗人의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史叢』 72, 2011.
- , 「17-18세기 淸朝의 滿洲地域에 대한 政策과 認識: 건륭기 만주족의 위기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舒展, 「關於拉林地區滿族移民的歷史思考」, 『黑龍江民族叢刊』 6期, 2008.
- 吳強稼, 「清代吉林圍場與移民屯田」, 『社會科學戰線』 6期, 1994.

- 王振科、劉冬冬, 「清代乾隆時期回贖旗地數字考辨」, 『吉林師範大學學報』 2期, 1990.
- 王革生, 「京旗蘇拉移駐考辨」, 『史學集刊』 4期, 1985.
- 劉麗麗, 「清代松花江上遊地區的農業開發(1860年之前)」, 東北師範大學碩士論文, 2008.
- 劉麗麗, 「京旗屯墾與松花江上遊地區的農業開發」, 『北方文物』 2期, 2013.
- 尹宏鋒, 「淺談清嘉慶道光年間對哈爾濱地區的京旗移駐」, 『學理論』 24, 2009.
- 魏克威, 「富俊與吉林的早期開發」, 『東疆學刊』 1期, 2000.
- 魏影, 「清代京旗回屯思想述論」, 『江南社會學院學報』 4期, 2006.
- , 「略論清代京旗回屯的失敗」, 『北方文物』 1期, 2008.
- , 「清代京旗回屯双城堡始末」, 『清史論叢』, 2008.
- , 「清光緒朝京旗回屯呼蘭始末」, 『北方文物』 4期, 2011.
- , 「清代回屯京旗社會保障述論」, 『歷史檔案』 2期, 2013.
- 魏影 王小紅, 「乾隆朝京旗回屯述略」, 『歷史檔案』 1期, 2007.
- 李令福, 「清代黑龍江流域農耕區的形成與擴展」, 『中國歷史地理論叢』 3期, 1999.
- 張立珍, 「京旗還屯與社會轉型」, 『遼寧大學學報』 4期, 1995.
- 定宜庄, 清代京旗移駐東北屯墾始末, 中央民族學院碩士學位論文, 1985.
- 定宜庄, 「試論清代中葉京旗的双城堡屯墾」, 『北方文物』 1期, 1987.
- 趙啓重, 「“京旗還屯”述論」, 『黑龍江社會科學』 3期, 1993.
- 趙麗艷, 「清代双城堡地區保甲述略」, 『滿族研究』 3期, 2009.
- 刁書仁, 「嘉道時期双城堡伯都訥屯墾論略—兼論流民對吉林的開發」, 『清史研究通訊』 3期, 1990.
- 刁書仁, 「乾嘉時期東北民典旗地整理論略」, 『社會科學輯刊』 6期, 1991.

刁書仁, 「略論乾隆朝京旗蘇拉的移駐」, 『北方文物』2期, 1994.

朱大可, 「京旗移墾的双城滿族人家及其後裔個案研究」, 黑龍江省社會科學院碩士論文, 2009.

陳伯霖, 「黑龍江滿族移民旗屯建制述略」, 『黑龍江民族叢刊』2期, 1990.

何榮偉, 「簡述清代双城堡地區的行政制度」, 『滿族研究』1期, 1992.

何榮偉 趙麗艷, 「清代双城堡八旗的設置」, 『蘭臺世界』2期, 2001.

移駐與開墾 —以清代“京旗屯墾”政策爲中心

許惠潤

清代旗人的生計問題自康熙朝開始日益嚴重, 遂漸發展成爲清代的一大痼疾. 清庭先后采取了擴大兵額, 增加和償賜糧餉, 回贖旗地, 京旗回屯直至漢軍出旗分流等一系列措施, 謀求八旗生計問題的解決. 京旗屯墾指清朝爲了八旗生計問題, 決定將北京的八旗兵丁回遷至東北進行屯田的一項措施. 乾隆初年, 政府中一些人士開始提出移駐京旗閑散回至東北屯田的意見主張, 并在隨後實施, 直至清末. 乾隆朝京旗屯墾拉林、阿勒楚喀, 嘉慶、道光兩朝屯墾双城堡、伯都訥, 光緒朝屯墾呼蘭, 前後歷經六朝百餘年時間.

雖然在屯墾初期政府給予其優厚待遇, 但是由于土地不能全盡地利及京旗自身問題, 京旗的生活日漸貧困. 爲此, 清庭不得不花費巨額帑項, 制定各種生活保障措施, 以維持移駐京旗的生計. 這項政策最終未能完全實現政府的計劃, 但確有相當部分京旗子弟留在了屯墾地, 解決了自身及其後裔的生計問題. 更爲重要的是京旗屯墾最終導致了移駐地區的快速開發, 促進了民族融合, 完成了變邊陲爲內地的歷史進程.

關鍵詞 : 八旗生計, 移京旗實邊, 京旗屯墾

Residing and reclamation: Relocation of the capital Eight Banners to the northeast during the Qing Dynasty

Huh, Hye-yun

During the early Qianlong reign, the livelihoods of the Eight Banners began to decline. To solve this problem, the Qing government used costly measures between the Kangxi and Qianlong reigns, with little effect. During the height of the Qianlong reign, men of insight proposed that the people within the capital of the Eight Banners should be transplanted to the northeast, which was implemented during the final period of the Qing dynasty.

Although the Qing government provided generous supported during the initial stage of resettlement, life of the capital Eight Banners became increasingly impoverished because the land did not respond well to Eight Banner subsistence techniques. As a result, the Qing government heavily invested in the implementations of various measures to maintain the livelihoods of the Bannerman who had relocated. These policies and government plans eventually failed but many Bannerman did leave their homes and adapted to relocation on their own terms.

Although emigration policies were not successful, descendants of the Eight Banners thrived in the northeast, and the region was subsequently promoted as an area where merging of nationalities on a frontier was historically successful to incorporate borderlands into the larger nation.

Thus, settlement eventually le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relocated areas and promoted national integration.

Key Words : Eight Banners livelihood, Capital Eight Banners migration to strengthen frontier defence, Capital Eight Banners relocation to the Northeast.